

(報告)

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030
----------	------

제출년월일 : 2001년 2월 7일

발 의 자 : 홍경표의원외 9명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자문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갈등의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의회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능 (안 제2조)

-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 자료의 수집,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 (2)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 (3) 주민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

나. 구성 및 위원 위·해촉(안 제3조, 제4조)

- (1) 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
- (2)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다. 임기 및 회의 (안 제5조, 제7조)

- (1)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2)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

라.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가능 (안 제9조)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성남시의회조례 제 호

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 자료의 수집,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2.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3.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국장이 서기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인사
2. 지방자치 및 의회관련 기관에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교수등 저명인사
3.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4. 기타 위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자문) ①의회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하거나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위원 또는 위원회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